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33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임종득 · 추경호 · 서천호

김예지 · 이준석 · 안철수

김상훈 · 윤상현 · 박성훈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인공지능 활용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연기, 열 또는 불꽃 등의 패턴을 자동 분석하여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소방관서 등에 해당 사실이 즉시 전송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고, 이하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초기 화재 대응이 중요한 시설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특정 소방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지역 등이나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생활하는 주택·시설 또는 영세 상인의 사업장 등의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다.

- ⑤ 소방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의2(인공지능 활용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연기, 열 또는 불꽃 등의 패턴을 자동 분석하여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소방관서 등에 해당 사실이 즉시 전송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고, 이하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u> <u>② 소방청장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초기 화재 대응이 중요한 시설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지역 등이나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생활하는 주택·시설 또는 영세 상인의 사업장 등의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